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7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 및 제3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2. 27.~3. 18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, “제1항제4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법 제146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146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법 제146조제1항제6호”를 “법 제146조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8장제7절의 제목 “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”를 “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법 제146조제4항”을 “법 제146조제5항”으로, “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소방분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 중 “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, 특정부동산에 대한”을 “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8장제7절의 제목, 제25조,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15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7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17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세울) ①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세울) ①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세울) ①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<u>제1항제4호</u>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21조(세울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-- ----- <u>제2항제1호</u>----- -----.</p>
<p>제23조(신고 및 납부) <u>법 제147조제1항제2호</u>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<u>법 제146조제1항제5호</u>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</p>	<p>제23조(신고 및 납부) ----- ----- -- <u>법 제146조제2항제2호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4조(신고 및 납부) 법 제14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<u>법 제146조제1항제6호</u>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신고 및 납부) ----- ----- -- <u>법 제146조제2항제3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절 <u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</u></p>	<p>제7절 <u>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</u></p>
<p>제25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4항</u>에 따른 <u>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	<p>제25조(세율) <u>법 제146조제5항</u>--- --- <u>소방분</u> ----- ----- <u>제3항</u>-----.</p>
<p>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<u>법 제147조제3항</u>에 따른 <u>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</u></p>	<p>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 <u>법 제147조제6항</u>에 따라 <u>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시 전 지역으로 한다.	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(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(2133-3357)